

# 법적 계획

## Legal Plans

### 치매환자를 돕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만, 치매환자에게 있어 법적 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치매란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력, 판단력 및 기타 지적능력이 감퇴된 상태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입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가족과 친구들은 환자가 법적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계획이 속히 마련될수록 치매환자 자신이 이 계획수립 과정에 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료 및 장기 간병 (long-term care) 에 관한 계획
- 재정과 재산의 관리에 대한 계획
- 치매환자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 선정

이 책자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법적 조언을 위해 만든 책자는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법률 전문인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1. 법적 판단력 (Legal Capacity)

대부분의 경우, 치매 환자가 주어진 법률서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환자는 이 서류에 서명을 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판단력 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적 판단력이란 공식 서류에 서명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구되는 수준의 법적 판단력은 법률 서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정확히 어느 수준의 법적 판단력이 요구되는지를 알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치매환자가 법적 서류에 서명하기 전:

#### 환자와 대화 하십시오.

치매환자가 그 서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서류에 서명할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환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의학적 의견을

#### 받으십시오.

환자의 정신능력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하는데 의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문서의 종류를 파악해 놓으십시오.

사망선택 유언 (living will), 재산관리신탁, 법적 위임장 등의 서류에 있는 서명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된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환자는 이런 서류에 서명했음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법적판단력 (공식 서류에 서명하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판단력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을 지니고 있는 한, 환자는 법적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 2. 법적 서류 (Legal Documents)

### 보호자/후견인

####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한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재정적 또는 의료상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간병인이 이 개인의 보호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후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호자나 후견인은, 보호를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재산과 의료관련 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한 개인이 법적 판단력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 할 때 보호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원은 치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자가 자기 자신을 돌보거나 재산을 관리 할 능력이 없음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법적판단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개인에 대해 법원에서 법적판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법원은 이 개인을 위한 보호자나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보호자는 이 개인을 돌보는 것과 그를 보호하는 보호권 (한 개인을 위한 법적인 책임) 행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보호자 지정 신청을 하면, 치매환자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 (summons: 법원에 나올 것을 알리는 서류) 와 보호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본이 송달 될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보호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보호자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치매환자나 다른 사람이 이 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청문회를 엽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정합니다.

## 사망선택 유언

(Living Will)

치매환자는 사망선택 유언을 통해 생명연장 보조장치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미리 기록해 놓습니다. 사망선택 유언은 환자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 재산관리 신탁

(Living Trust)

재산관리 신탁은 재정과 관련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사람(즉 법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재산관리 신탁은 한 개인이 재산 관리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양도인 (grantor) 또는 위탁인 (trustor) 이 재산관리 신탁을 설정하고,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수탁인 (trustee) 으로 지정합니다. 보통 개인이나 은행을 수탁인으로 지정합니다. 수탁인은 신탁계좌에 들어있는 재산(자산)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서류상의 양도인이나 위탁인이 더 이상의 재정관련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없게 되면, 재산관리 신탁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신탁인이 됩니다.

재산관리 신탁이 그 목적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자산)이 신탁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구좌의 명의는 개인의 이름에서 재산관리 신탁계좌의 이름으로 이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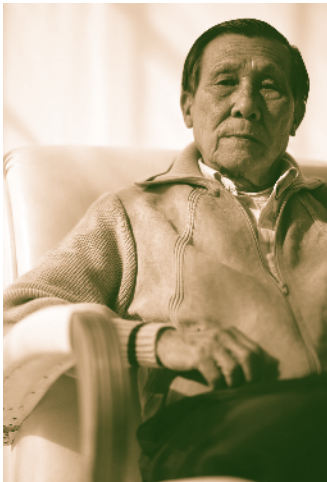
재산관리 신탁을 이용하면, 개인이 사망한 후 법원에서 수행하는 유산 분배 절차인 유언 검증 (probate)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관리 신탁은 반드시 세금 절감의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 법적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법적 위임장은 치매환자 (principal 또는 위임 당사자라 부릅니다) 가 미리 다른 사람 (agent 또는 대리인이라 부르며, 보통 믿을만한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선정됩니다) 을 정해놓고, 치매환자가 더 이상 재정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 대리인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위임장은, 위임 당사자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항구적 (durable)” 위임장입니다.

법적 위임장은 치매 환자에 의해 언제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 위임장에는 위임 당사자인 치매환자가 내린 결정을 대리인이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치매환자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한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남들이 보기에 그 결정이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대리인은 위임 당사자인 치매환자의 수입과 자산 (재산) 을 관리하고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결정권자는 치매환자의 지시에 정해진 대로 치매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법적 위임과 유언집행인 (executor) 의 차이는 무엇인가? 법적 위임을 받은 사람은 치매환자가 살아있는 동안 환자를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유언집행인은 치매환자가 사망한 후 그의 유산을 관리합니다.

## 의료 관련 법적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 관련 법적 위임장은 치매환자가 한 개인 (대리인) 을 지정하여 환자 자신이 더 이상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이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 의사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선택
- 치료의 종류 선택
- 치료 및 간병 시설 선택

말기 치매환자의 경우, 결정권자 (의료 관련 대리인) 는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DNR (즉 상대가 아무리 악화되어도 소생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지시) 을 내리는 등의 의료 및 간병 서비스 및 임종관련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유언장 (Will)

유언장은 치매 환자가 누구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1. 유언 집행인 (executor) – 유산을 관리 할 사람
2. 유산 상속인 (beneficiaries) – 유산을 물려 받을 사람

유언장에 명기된 유언 집행인은 유언장을 작성한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치매 환자가 사망한 후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지 등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유언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성자의 사망 후에도 자신의 바람이 이행 될 것이라는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 해 놓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지만, 특히 치매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환자는 직접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동안 가능한 빨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 해 놓아야 합니다.

### 3. 변호사를 찾는 방법

#### (How to find a lawyer)

노인관련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관련법은 보호자 권리, 장애관련 계획수립 및 기타 노인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법률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당신의 가족을 돕고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가 노인관련 전문 변호사를 소개 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알츠하이머협회 지부에서도 인근의 노인관련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알츠하이머협회 지부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1.800.272.3900 에 전화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정부기관 (Area Agency on Aging) 에 연락하거나 노인을 위한 봉사기관 찾아보기 서비스 (Eldercare Locator) 에 연락 해 보십시오. 전화번호는 1.800.677.1116 이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eldercare.gov](http://www.eldercare.gov) 입니다. 또한 한국분들을 위해 Health Consumer Center of Los Angeles 에서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1-800-896-3203 입니다.



## 4. 변호사와의 면담 준비

### (How to prepare for your meeting)

치매 환자의 재산 (자산) 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미리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Checklist for meeting with your lawyer

- 보유 재산 (자산) 에 대한 현재 가치와 소유주 명단
- 유언장, 신탁증서, 법적 위임장 등 유산관리 계획과 관련된 모든 서류
- 모든 부동산 소유 증명서 사본
- 최근 소득세 보고서 사본
- 생명보험 증서 및 해약시 환불에 관한 규정
- 건강보험 정관 및 혜택 안내서
- 의료시설 입원 계약서
- 모든 관련 가족, 간병인, 재정 상담인 또는 회계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5. 변호사와 의논 할 내용

### (What to discuss with your lawyer)

다음 세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꼭 의논하십시오:

1.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관련 결정에 대한 내용
2. 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
3. 메디케어와 기타 건강보험 및 각종 장기간 간병 서비스 보험 내용

## 6. 변호사가 사용하는 법률용어 (Terms your lawyer may use)

### Agent (대리인):

법적 위임장을 통해 치매환자 (위임 당사자) 를 위한 재정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보통 믿을만한 가족이나 친구 중 지정: health care agent (의료 관련 대리인) 참조.

### Artificial life support (생명연장 보조장치):

호흡과 같은 필수 신체기능을 유지시켜 회복가능이 없을 정도로 병세가 위중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 기기 및 기술.

### Beneficiaries (유산 상속인):

치매 환자의 사망 후 환자의 유산을 물려 받도록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

### Conservator (후견인):

치매환자를 대신해 재정 그리고/또는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보호자 (guardian) 라고 부름.

### Custody (보호권):

한 개인을 위한 법적 책임

### DNR:

“Do Not Resuscitate” 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심장이나 호흡이 멈출 경우 다시 이를 소생시키려 하지 말아 줄 것을 미리 지시해 놓는 것.

### Durable (항구적):

법적 위임장이 항구적인 경우에는 치매 환자가 더 이상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어도 위임장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뜻.

### Execute (집행):

법적으로 서명하거나 법적 서류의 내용을 “이행” 하는 것.

### Executor (유언 집행인):

치매 환자의 사망 후, 환자의 유산을 관리하도록 유언장에 명시된 사람.

### Grantor (양도인):

재산관리신탁 (living trust) 설립의 주체. 예를 들어 “김철수 재산관리신탁” 의 양도인은 “김철수” 이다; 위탁인 (trustor) 참조.

**Guardian (보호자):**

치매환자를 대신해 재정 그리고/또는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후견인 (conservator) 이라고 부름.

**Health care agent**

**(의료관련 대리인):**

의료 관련 법적 위임장을 통해 치매환자 (위임 당사자) 를 위한 의료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보통 믿을만한 가족이나 친구 중 지정.

**Legal Capacity (법적 판단력):**

공식 서류에 서명하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판단력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Principal (위임 당사자):**

법적 위임장을 통해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 줄 사람을 법적으로 지정한 치매환자.

**Probate (유언 검증):**

사망한 사람의 재산 분배를 위해 법원에서 사용하는 절차.

**Summons (법원 출두 명령서):**

법원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서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치매환자에게 송달 됨.

**Trustee (수탁인):**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신탁 (living trust) 에 포함 된 재산 (자산)의 관리를 위해 선택된 개인이나 은행.

**Trustor (위탁인):**

치매환자로서 이 사람을 위해 재산관리신탁 (living trust) 이 설립 됨. 예를 들어 “김철수 재산관리신탁” 의 위탁인은 “김철수” 이다; 양도인 (grantor) 참조.

위 용어들의 의미는 치매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맞게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용어들은 다른 법적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계획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Quick Tips: Legal planning**

- 법적 위임장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은 위임장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본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적 위임장에 후속 (예비) 대리인을 정해 놓으십시오. 현 대리인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제 3자를 법적 위임장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만일 1) 의료관련 법적 위임장 그리고/또는2) 서명된 사망선택 유언이 준비되었으면, 담당의사와 기타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본을 주십시오.
- 의료관련 법적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에게 두뇌 부검 동의권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가족중에 유산을 관리할 시간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유산관리를 은행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